

#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에 관한 세부운영지침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기준관리부

제정 2021. 4. 9. 지침 제329호

개정 2022. 1. 26. 지침 제360호

개정 2023. 2. 7. 지침 제390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산정 내역 등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현지확인에 대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운영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2. 7.>

1. “현지확인심사”라 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소속직원이 현지확인대상 의료기관에 현장 방문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산정내역이 진료사실에 근거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심사 하는 방식을 말한다.

2. “비대면확인심사” 라 함은 심사평가원 소속직원이 대상기관을 현장방문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산정내역과 관련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확인심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주관부서” 라 함은 「직제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업무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현지확인심사를 담당하는 부(임시조직 포함)가 속한 실(센터 또는 단)을 말한다.
4. “주관부서장” 이라 함은 제3호를 지휘·감독하는 실장(센터장 또는 단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현지확인심사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 범위)** ① 현지(비대면)확인 심사는 심사평가원이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여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시행한다. 이 경우 진료수가 산정내역과 관련된 시설·인력·장비, 시술방법, 약품 및 치료재료 구입·사용실태, 진료기록부 등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3. 2. 7.>

②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산정내역 등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진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3. 2. 7.>

## 제2장 현지확인 준비

**제5조(연간계획 수립)** 주관부서장은 효율적인 현지확인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현지확인 대상기관 수, 심사인력 및 실시기간
2. 확인대상 기간, 중점확인 항목 및 착안사항 등

**제6조(현지확인팀 구성)** ① 의료기관 종별 등 규모에 따라 심사팀을 구성하며 심사분야 경력자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 현지확인 중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 예상되는 경우 심사평가원 소속 전문가(자동차보험 심사위원 등)가 동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2. 7.>

**제7조(대상기간)** 현지(비대면)확인 심사는 현 청구월분(별지 제1호 서식의 진료수가 현지확인 통보서 발부 기준 현재 심사완료가 되지 않은 청구월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그로부터 최근 지급된 이전 2개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2. 7.>

**제8조(대상기관)** 대상기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심사평가원의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확인 등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2. 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협회 등 대외기관으로부터 의뢰된 기관 중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3. 기타 민원 다발생기관, 공공심사 의뢰기관 등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제9조(현지확인 대상기관 선정위원회)** ①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현지확인 대상기관 선정을 위해 현지확인 대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

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2. 7.>
-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동차보험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의과·한의과 자동차보험 심사위원 각 1인, 주관부서의 부장 4인 및 팀장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2. 7.>
- ④ 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주관부서의 실무팀장으로 한다.
- ⑤ 선정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1.26.>
- ⑥ 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2. 7.>

**제10조(선정위원회 역할)**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2. 7.>

- 1. 대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 2. 대상기관이 현지확인심사 실시 전 폐업 등으로 현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종결처리 여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주관부서장이 현지확인과 관련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선정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 ①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7.>
  -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당해 심의·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당해 심의·의결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스로 당해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 위원은 선정위원회의 의사정족수에는 포함하나,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⑥ 위원장은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기피·회피로 인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때에 위원의 보충 지명 또는 재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7.>

**제12조(현지확인 심사자의 제척 등)** ① 현지확인 심사자(이하 “심사자”라 한다)가 의료기관 대표자 등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확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지확인팀에서 제외시키거나 기피신청 또는 회피하여야 한다.

- ② 심사자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 ③ 심사자는 현지확인심사와 관련하여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 유지)** 심사위원 및 주관부서 직원은 이 지침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현지확인심사 실시

**제14조(사전통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대상기관에 현지확인 실시 전에 유선 등 방법으로 방문을 통보하되, 자료의 조작, 은닉 또는 폐기가 우려되는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2. 7.>

**제15조(직원교육)** 주관부서장은 심사자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한다.

**제16조(현지확인심사 방법)** ① 현지확인심사는 심사자가 의료현장을 직접방문하여 확인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비대면확인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산정내역과 관련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심사토록 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소속직원이 현지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진료수가 현지확인 통보서와 심사평가원의 소속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진료수가 현지확인 안내문으로 선정사유 등

을 설명한다. <개정 2023. 2. 7.>

③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료제공요청서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시 진료사실여부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산정내역 등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과 관련된 자료 위주로 구체화하여 자료를 요청한다. <개정 2023. 2. 7.>

④ 심사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명세서와 진료기록 및 기타 자료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⑤ 심사자는 확인한 청구상의 문제점, 기타 개선이 필요한 사항,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 대표자 또는 담당의사 및 청구책임자에게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⑥ 현지확인 결과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의 진료수가 현지확인 면담표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해당의료기관 대표자 및 청구책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다. <개정 2023. 2. 7.>

**제16조의2(현지확인심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기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확인심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기관으로 판단한다.

1. 대표자가 명시적으로 현지확인심사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2. 대표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기관 출입을 막는 경우
3. 대표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폭언,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위력을 가하여 심사자를 압박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4. 의도적으로 관계서류 제출을 지연·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5. 기타 다른 방법으로 현지확인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

도록 하는 경우 등

[본조신설 2023. 2. 7.]

## 제4장 현지확인심사 결과 처리

제17조(정산결과 등 통보 및 보고) ① 현지확인심사 결과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자동차보험진료수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청구한 것이 확인된 경우 현 청구월분과 이미 지급된 진료분에 대하여 주관부서에서 지체없이 심사 및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진료 적정성에 대해 전문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처리한다.

② 현지확인심사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해당 의료기관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현지확인심사 결과 「의료법」, 「약사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의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관련 내용에 대해 관리감독기관(보건소 등)에 통보한다.

제17조의2(현지확인심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기관에 대한 처리) 제16조2에 따른 현지확인심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기관 중 진료수가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기관에 대하여는 심사불능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2. 7.]

제18조(이의제기) ① 현지확인심사 결과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등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4(이의제기)를 적용한다.

제19조(정산실적 관리) 주관부서장은 현지확인심사 실적에 대한 통계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지침 제329호, 2021. 4. 9.>

이 지침은 202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침 제360호, 2022. 1. 26.>

이 지침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침 제390호, 2023. 2. 7.>

이 지침은 2023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 진료수가 현지확인 통보서

의료기관 명 칭 :  
기 호 :  
대표자 :  
소재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현지확인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나. 내 용 :  
다. 방문자 성명 :

20 .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진료수가 현지확인 안내문

1. 금번 심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6조3에 따라, 수진자 조회 및 치료 참관 등을 통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산정내역 등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 귀 기관은(□ 자체 선정, □ 대외 의뢰, □ 기타)에 의해 현지확인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선정사유:
3. 귀 기관에 대한 심사는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까지 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심사 상 필요한 경우 기간 연장 및 자료 추가 제출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후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의제기 안내(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자동차보험>이의제기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현지확인심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 진료수가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기관에 대하여는 심사불능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자동차보험 현지확인심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기준관리부(대표번호 1644-2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

자료제공요청서	
① 대상기관	의료기관 명칭 (기 호)
	주 소
	대표자성명
② 대상기간	년 월 ~ 년 월 진료분
③ 대상자	대상기간 내 자동차보험환자
④ 제출서류	<p>가.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각종 검사결과지                      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진료비 계산서) 및 접수대장                      다.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실시대장 등                      라. 의약품 및 치료재료 구입에 관한 서류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의약품 수불대장, 거래명세서 등)                      마. 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현황 관련 서류                      바. 외출 외박대장                      사. 기타 현지확인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p> <p>※ 진료(조제)기록부 등 위 제출자료를 전산으로 기록(보관)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진료내역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 기록(저장)된 전산자료(데이터베이스 포함) 일체(원본)를 심사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을 제공한다.</p>
⑤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제2항, 3항</li> <li>-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2항</li> <li>-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5조</li> <li>-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제17조제1항제2호</li> </ul>
<p>1 위와 같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청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 제출한 모든 자료는 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 font-weight: bold;">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p>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3. 2. 7.>

### 진료수가 현지확인 면담표

의료기관 명칭		기 호	
일 시		장 소	
확인내용 및 결과			
확인자	의료기관	대 표 자 :	(인)
		청구책임자 :	(인)
			(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인)
			(인)